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57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권성동·강선영·김승수

김용태 · 신동욱 · 인요한

서지영 • 이만희 • 임종득

한기호 · 김민전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국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	
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의장은</u>
	<u>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국민</u>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